

「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」 신청 안내문

✔ 지원대상

- 철거처리 : 관내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의 주택(부속건물 포함), 비주택(창고, 축사)
- 지붕개량 :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
-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: 전면 철거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※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(신고) 득할 것(무허가 건축물 포함)

✔ 지원대상자 우선순위

- 우선순위 : 우선지원가구(기초수급자→차상위계층)→일반가구
- 일반가구 우선순위 기준 : 오래된 사용승인일(건축물대장상)→작은 면적

✔ 지원금액

※ 지원금액외의 금액은 본인 부담 필요

구 분		슬레이트 철거처리		주택 지붕개량 (주택에 한함)
		주택	비주택(창고, 축사에 한함)	
2023년 지원물량(동)		400동	47동	36동
동당 지원금액	우선지원가구	전액	슬레이트 지붕면적 200㎡까지 지원	10,000천원
	일반가구	3,520천원		3,000천원

✔ 지원범위

-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·제거·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- 덧씌운 지붕은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 지원
(단,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, 처리비는 본인 부담)

✔ 지원기준

- 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
- 과거 본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중복지원 불가
- 보관 또는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은 지원 불가
(단,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해체·철거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에 한해 지원 가능)
-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건축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분류
- 사업대상자 확정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및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

○ 현장 면적 조사시 차량 진입이 어려운 부지,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
✔ **신청기한** : 2023. 02. 06. ~ 2023. 02. 28.

✔ **신청인**

○ 슬레이트 철거, 우선지원대상 지붕개량 사업 : 소유자 또는 관계자
- 가족, 임차인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
→ 가족관계증명서, 임차계약서, 위임장(슬레이트 처리 동의서)

○ 일반대상 지붕개량 :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

✔ **신청방법** : 신청서 작성 후 건축물 소재 읍·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
✔ **공사방법** : 위·수탁대행사업자가 현장면적 조사 및 신청자와 일정 조율 후 공사 시행

✔ **문의** : 환경과 자원순환팀(☎ 055-860-3264) 또는 읍·면행정복지센터

읍·면행정복지센터 연락처

- ☑ 남해읍 총무팀 ☎055-860-8006
- ☑ 이동면 총무팀 ☎055-860-8054
- ☑ 상주면 총무팀 ☎055-860-8104
- ☑ 삼동면 총무팀 ☎055-860-8156
- ☑ 미조면 총무팀 ☎055-860-8205
- ☑ 남 면 총무팀 ☎055-860-8257
- ☑ 서 면 총무팀 ☎055-860-8304
- ☑ 고현면 총무팀 ☎055-860-8353
- ☑ 설천면 총무팀 ☎055-860-8405
- ☑ 창선면 총무팀 ☎055-860-8456

☞ 알려드립니다!!

「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」환경부 공고시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함을 알려드립니다.